

September 01, 2016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는 수집, 제공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국립대에 재직 중인 모 법대 교수는 로앤비, 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등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위 업체들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출생연도,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설사 정보 주체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도 영리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로앤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로앤비 뿐 아니라 다른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역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 사건의 상고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예외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법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로앤비를 대리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석론, 입법자료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여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그 동의가 미친다고 보이는 범위에서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 형태와 범위, 원고의 공개 의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공

적인 인물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할 때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후통제를 통해서 보호되며 공개 자체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입법 과정에서 작성된 국회 심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입법자의 의사 역시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참고했던 EU 및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관련 논문을 풍부히 제시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 8. 17.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 내린 것으로서 개인정보 분야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공개된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물정보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예외사유 외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가 정립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법무법인 세종의 정보보호 전문그룹의 전문적 역량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보보호 전문그룹은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은 물론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권이선 변호사 | TEL. 02 316 4697 | E-Mail. eskwon@shinkim.com |
| ●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50 | E-Mail. jychang@shinkim.com |
| ● 마이클 장 선임외국변호사(호주) | TEL. 02 316 4653 | E-Mail. mchang@shinkim.com |